

< 정 오 표 (1)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4.01.24

3. 주요 정정사항 :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및 기타 자구 정정 등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투자대상 정의 변경(대여, 차입)

[규 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투자대상 자산 등)	<p>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주식”이라 한다)</p> <p>2.~4. (생략)</p> <p>5. <u>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u></p> <p>6~7. (생략)</p> <p>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u>수익증권 등을 제외한</u> 증권의 대여</p> <p>10. <u>수익증권 등을 제외한</u> 증권의 차입</p> <p>13. <u>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u>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8조의2제4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주식”이라 한다)</p> <p>2.~4. (현행과 동일)</p> <p>5. <u>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6~7. (현행과 동일)</p> <p>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p> <p>10. 증권의 차입</p> <p>13. <u>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u>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제18조(투자한도)	<p>8. <u>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p>	<p>8. <u>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p>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p>

	비중은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p> <p>1. ~4.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p> <p>1. ~4.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6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p>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u>다만, 해당 증권</u>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37조(수익자총회)	<p>①~⑤ (생략)</p> <p>⑥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p>	<p>①~⑤ (현행과 동일)</p> <p>⑥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 이상</u>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p>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p>⑩ (생략)</p>	<p>⑩ (현행과 동일)</p>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②~④ (생략)</p>	<p>①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1.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2.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②~④ (현행과 동일)</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p>① <u>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u></p> <p>1.~2. (생략)</p> <p>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신설></p> <p>4. (생략)</p>	<p>① <u>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u></p> <p>1.~2. (현행과 동일)</p> <p>3.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4. (현행과 동일)</p>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p>① (생략)</p> <p>② <u>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u></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u>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③ (생략)</p> <p>④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u></p>	<p>①~③ (현행과 동일)</p> <p>④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u>간이투자설명서</u>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u></p>

	<p>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으로 표시한 경우</p> <p>2. (생략)</p> <p>⑥~⑩ (생략)</p>	<p>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u>및 간이투자설명서</u>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동일)</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표시한 경우</p> <p>2. (현행과 동일)</p> <p>⑥~⑩ (현행과 동일)</p>
--	--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2.~8. (생략)</p>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u>또는 간이투자설명서</u>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2.~8. (현행과 동일)</p>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p>가. 운용전문인력</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p> <p>주2) 주3) (생략)</p>	<p>가. 운용전문인력 <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이란 <u>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u>을 말합니다.</p> <p>주2) 주3) (현행과 동일)</p>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p>- 주식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p> <p>-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p>	<p>- 주식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8조의2제4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p> <p>-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p>

<p><u>법 제9조제14항의</u>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p> <p>- 증권의 대여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 이하</p> <p>- 증권차입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p> <p>- 고유재산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 라) (생략)</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10)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투자대상의 (6)~(10), 나.투자제한의 (2)~(6)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p>	<p><u>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u>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p> <p>-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p> <p>- 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p> <p>- 고유재산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 라) (생략)</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10)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의 (5)~(10), 나. 투자제한의 (2)~(5)의 규정에 따른</p>
---	--

	<p>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u>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나.투자제한의 (5)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u></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주1)~주3) (생략)</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5)~주6) (생략)</p> <p>주7) 투자신탁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u>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u>,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등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p> <p>주1)~주3) (현행과 동일)</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5)~주6) (현행과 동일)</p> <p>주7) 투자신탁관련 기타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p>	<p>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p>
<p>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u>22%</u> (지방소득세 포함) · <u>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사유</u> 천재지변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u>Class C-P 가입자에 한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세액공제: <u>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u>16.5%</u> (지방소득세 포함, <u>종합과세 가능</u>)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천재지변

	<p>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u>치료·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p> <p>· <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u>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p>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u>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p> <p>·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u>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u>최근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u></p> <p>- (생략)</p>	<p>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 <u>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p>- (현행과 동일)</p>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u></p>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u></p>

<p>(2) 수익자총회의 소 집 및 의결권 행사방 법</p>	<p><u>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u>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부. 1. 수익자의 권 리에 관한 사항</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 에 의하여야 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p> <p>- 신탁계약기간의 변경</p> <p>- 집합투자업자의 변경</p> <p>- (신설)</p> <p>- (생략)</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 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 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 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하는 각 투자신 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 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현행과 동일)</p>
<p>제5부. 1. 수익자의 권 리에 관한 사항</p>	<p>(4) 반대매수청구권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p>	<p>(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p>

	<p>다른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p>	<p>- (생략)</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그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p>- (현행과 동일)</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그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p>	<p>- (생략)</p> <p>-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현행과 동일)</p> <p>- 이 투자신탁의 <u>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u>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① 영업보고서 - (생략) -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u>	① 영업보고서 - (현행과 동일) -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 (생략)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u>할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u>행사내용</u> -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u>행사내용</u> 및 그 사유 - (현행과 같음)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u>참고할 수 있으며</u> , 투자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u>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u>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부. 5. 투자운용인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 "이란 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

	주2) 주3) (생략)	<p>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주3) (현행과 동일)</p>
제1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2. 과세	<p>(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 <u>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 <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u> 과세: 기타소득 <u>16.5%</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p>(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P 가입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세액공제: <u>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u>16.5%</u> (지방소득세 포함, <u>종합과세 가능</u>)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u> 과세: 기타소득 <u>13.2%</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제3부. 요약재무정보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 정 오 표 (2)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차근차근수익쌓기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4.01.24

3. 주요 정정사항 :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및 기타 자구 정정 등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NICE피앤아이)

[규 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투자대상 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u>증권</u>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u>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u>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u>이 투자신탁재산으로</u> 지급할 수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u>

	있다.	<u>투자신탁재산</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u>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u>
제37조(수익자총회)	①~⑤ (생략) ⑥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4분의 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①~⑤ (현행과 동일) ⑥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 1. <u>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2.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3.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4. <u>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p>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u></p> <p>⑩~⑪ (생략)</p>	<p>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u></p> <p>⑩~⑪ (현행과 동일)</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②~④ (생략)</p>	<p>①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1.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2.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②~④ (현행과 동일)</p>
<p>제40조(판매수수료)</p>	<p>① (생략) ② (생략) 1. 종류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7</p>	<p>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종류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7 <u>이내</u></p>

	2. 종류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35 ③ (생략)	2. 종류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35 <u>이내</u> ③ (현행과 동일)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신설> 4.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현행과 동일)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2. (생략) ⑥~⑩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u>간이투자설명서</u>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u>간이투자설명서</u> 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동일)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⑥~⑩ (현행과 동일)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2.~8. (생략)</p>	<p>합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2.~8. (현행과 동일)</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p>	<p>가. <u>운용전문인력</u></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p> <p>주2) 주3) (생략)</p>	<p>가. <u>운용전문인력</u> <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주3) (현행과 동일)</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나. 투자제한</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p> <p>(생략)</p> <p>(2) 동일종목 투자</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가.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나. 투자제한</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p> <p>(생략)</p> <p>(2) 동일종목 투자</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가. 매입 (1) 매입방법 - (생략) - <삭제></p> <p>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생략) - <삭제></p> <p>(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생략) <신설></p> <p>(이하 생략)</p>	<p>가. 매입 (1) 매입방법 - (현행과 동일) -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p>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현행과 동일) -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u></p> <p>(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현행과 동일) .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p>	<p>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생략) <신설></p> <p>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생략) <신설></p>	<p>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현행과 동일) 주2) <u>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p>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현행과 동일) 주1) <u>상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u></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1)~주3) (생략)</p>	<p>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등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1)~주3) (현행과 동일)</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5)~주6) (생략)</p> <p>주7) 투자신탁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u>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u>,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5)~주6) (현행과 동일)</p> <p>주7) 투자신탁관련 기타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u>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u>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 <u>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u>Class C-P 가입자에 한함</u>) · 연금계좌 세액공제: <u>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u>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u>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u>16.5%</u> (지방소득세 포함, <u>중합과세 가능</u>)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u>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u>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u>최근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② 의결권 행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4분의 1 이상</u>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u> <p>- (생략)</p>	<p>② 의결권 행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 이상</u>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 <u>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p>- (현행과 동일)</p>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③ 연기수익자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p>③ 연기수익자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u>

	<p>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생략)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u>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u>)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u>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u>) - <u>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 (현행과 동일)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4) 반대매수청구권</p> <p>-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u></p>	<p>(4) 반대매수청구권</p> <p>-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p><u>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u>·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p>	<p>- (생략)</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생략)</p> <p>· 그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p> <p>·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 (현행과 동일)</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현행과 동일)</p> <p>· 그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p> <p>·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p>	<p>- (생략)</p> <p>-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현행과 동일)</p> <p>- 이 투자신탁의 <u>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u>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① 영업보고서</p> <p>- (생략)</p> <p>-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u></p>	<p>① 영업보고서</p> <p>- (현행과 동일)</p> <p>- <u>법 제87조제8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2) 자산운용보고서</p>	<p>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으로 표시한 경우</p> <p>- (생략)</p>	<p>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표시한 경우</p> <p>- (현행과 동일)</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나. 수시공시</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p> <p>-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u>행사내용</u></p> <p>-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p> <p>-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 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u>행사내용 및 그 사유</u></p> <p>- (현행과 같음)</p>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u>참고할 수 있으며</u>, 투자자는 <u>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u></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u>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u>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제1부. 5. 투자운용인력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p> <p>주2) 주3) (생략)</p>	<p><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이란 <u>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u>을 말합니다.</p> <p>주2) 주3) (현행과 동일)</p>
제1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2부. 2. 과세	<p>(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 <u>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 <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u> 과세: 기타소득 <u>16.5%</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p>(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u>Class C-P 가입자에 한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u>16.5%</u> (지방소득세 포함, <u>종합과세 가능</u>)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u> 과세: 기타소득 <u>13.2%</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제3부. 요약재무정보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 정 오 표 (3)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자펀드[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4.01.24

3. 주요 정정사항 :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및 기타 자구 정정 등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NICE피앤아이)

[규 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투자대상 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u>증권</u>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u>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u>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u>이 투자신탁재산으로</u> 지급할 수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u>

	있다.	<u>투자신탁재산</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u>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u>
제37조(수익자총회)	①~⑤ (생략) ⑥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4분의 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①~⑤ (현행과 동일) ⑥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 1. <u>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2.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3.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4. <u>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p>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u></p> <p>⑩~⑪ (생략)</p>	<p>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u></p> <p>⑩~⑪ (현행과 동일)</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②~④ (생략)</p>	<p>①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1.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2.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②~④ (현행과 동일)</p>
<p>제40조(판매수수료)</p>	<p>① (생략) ② (생략) 1. 종류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1</p>	<p>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종류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1 <u>이내</u></p>

	2. 종류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③ (생략)	2. 종류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u>이내</u> ③ (현행과 동일)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신설> 4.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현행과 동일)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2. (생략) ⑥~⑩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u>간이투자설명서</u>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u>간이투자설명서</u> 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동일)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⑥~⑩ (현행과 동일)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2.~8. (생략)</p>	<p>합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2.~8. (현행과 동일)</p>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p>가. <u>운용전문인력</u></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p> <p>주2) 주3) (생략)</p>	<p>가. <u>운용전문인력</u> <u>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주3) (현행과 동일)</p>
제2부. 6. 집합투자구조의 구조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신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주요 투자위험, 기타유의사항 추가</p>
제2부. 8. 집합투자구조의 투자대상	<p>가.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나. 투자제한</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p> <p>(생략)</p> <p>(2) 동일종목 투자</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p>	<p>가.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p> <p>-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나. 투자제한</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p> <p>(생략)</p> <p>(2) 동일종목 투자</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p>

	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p>가. 매입 (1) 매입방법 - (생략) - <삭제></p> <p>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생략) - <삭제></p> <p>(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생략) <신설></p> <p>(이하 생략)</p>	<p>가. 매입 (1) 매입방법 - (현행과 동일) -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p>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현행과 동일) -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u></p> <p>(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현행과 동일) . <u>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 (이하 현행과 동일)</p>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p>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생략) <신설></p> <p>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생략) <신설></p>	<p>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현행과 동일) 주2) <u>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p>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현행과 동일) 주1) <u>상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u></p>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등 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p>주1)~주3) (생략)</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5)~주6) (생략)</p> <p>주7) 투자신탁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u>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u>,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주1)~주3) (현행과 동일)</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5)~주6) (현행과 동일)</p> <p>주7) 투자신탁관련 기타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가 <u>집합투자계약 제45조의 규정</u> 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 <u>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u>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u>Class C-P 가입자에 한함</u>) · 연금계좌 세액공제: <u>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u>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u>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u>16.5%</u> (지방소득세 포함, <u>종합과세 가능</u>)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u>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p>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p> <p>· <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u> 과세: 기타소득 <u>16.5%</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p>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p> <p>·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u> 과세: 기타소득 <u>13.2%</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u>최근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4분의 1 이상</u>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u></p> <p>- (생략)</p>	<p>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 이상</u>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 <u>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p>- (현행과 동일)</p>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p>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u></p>

	<p>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p> <p>- 신탁업자의 변경</p> <p>- 신탁계약기간의 변경</p> <p>- 집합투자업자의 변경</p> <p>- (생략)</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p> <p>-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p> <p>-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p> <p>-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p> <p>-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 (현행과 동일)</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4) 반대매수청구권</p> <p>-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u></p>	<p>(4) 반대매수청구권</p> <p>-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u></p>

	<p>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p>	<p>- (생략)</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그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p>- (현행과 동일)</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그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p>	<p>- (생략)</p> <p>-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현행과 동일)</p> <p>- 이 투자신탁의 <u>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u>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① 영업보고서</p> <p>- (생략)</p> <p>-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u></p>	<p>① 영업보고서</p> <p>- (현행과 동일)</p> <p>-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u></p>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서류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 (생략)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u>행사내용</u> -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 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u>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현행과 같음)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u>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u>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u>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u>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부. 5. 투자운용인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주3) (생략)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u> "이란 <u>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u> 을 말합니다. 주2) 주3) (현행과 동일)

제1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2부. 2. 과세	<p>(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 <u>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 <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u> 과세: 기타소득 <u>16.5%</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p>(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u>Class C-P 가입자에 한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u>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u> ·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u>16.5%</u> (지방소득세 포함, <u>종합과세 가능</u>)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u>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상선고 · <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u> 과세: 기타소득 <u>13.2%</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제3부. 요약재무정보		<u>최근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